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201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2018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가단14923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억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유주

변론종결 2024. 3. 6.

판결선고 2024. 4. 3.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가단14923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망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강조하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C과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을 유지하여온 결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지분은 최소 50%에 해당하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미 피고가 C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연대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지분 주장

-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반복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 2)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14.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점, ② 피고는 C과 혼인한 사이이나,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고가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이 반복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안분 배당 주장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가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의 분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한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별소 화해권고결정 관련 주장

피고가 C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연대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도의 청구에 따른 별개의 의무이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을 이 사건에 관하여 고려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중연, 판사 김경년, 판사 이종욱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서구 D외 3필지 E아파트 F동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21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G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34.99 m'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대구광역시 서구 H	대	1134.1 m'
2. 대구광역시 서구 D	대	6638.3 m'
3. 대구광역시 서구 I	대	5860.2 m'
3. 대구광역시 서구 J	대	7216.5m'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2,3,4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20849.1분의 57.35

20849.1분의 57.35 끝.

